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0.12.20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0년 11월 15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0년 11월 22일 회부

라. 상정일자 : 제157회 영등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위원회(2010.1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안동수)

가. 제안이유

- 2011년 1월 1일 현행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새 「지방세법」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시행과 행정안전부 2011년도 「자치구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시달에 따라 지방세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제명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로 함
-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안 제2조~안 제16조)
 - 1) 종교단체에 대한 재산세
 - 2) 지방의료원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 3) 문화재에 대한 재산세
 - 4) 지방공사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 5)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재산세
 - 6)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

- 7)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 8)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등록면허세 및 재산세
- 9) 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 대한 재산세
- 10)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 1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재산세
- 12) 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 13)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
- 14) 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재산세
- 15)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 보칙

- 1) 재산세 감면 사항 중 직접사용의 의미(안 제17조)
- 2) 감면 제외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8조)
- 3) 각종 감면신청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19조)
- 4) 감면자료의 제출에 대한 사항(안 제20조)
- 5) 중복감면 배제에 관한 사항(안 제21조)
- 6)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을 적용에 관한 사항(안 제2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 현 영)

-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분법되면서 제정된 「지방세법특례제한법」에 위임된 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상정된 안건임
- 종합적으로 이 조례안은 현행 구세 감면 조례 적용시한 2010.12.31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등의 개정이 필요한 부분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제정으로 위임사무에 대한 조례안이며 행정안전부의 표준 준칙안에 따른 전부개정으므로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28 호
----------	--------

제출연월일 : 2010.11.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1년 1월 1일 현행 「지방세법」 분법에 따른 새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시행과 행정안전부 2011년도 「자치구 구세 감면 조례 표준안」 시달에 따라 지방세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2011년 1월 1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중복 감면규정을 폐지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 노익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감면
- 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에 대한 감면
- 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개발제한구역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 시장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 (안 제3조)

다. 주민세 재산분 및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종전 '사업소세')과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시·구세 세목교환에 따른 감면세목 정비 (안 제5조, 제8조, 제9조)

라. 기타 「지방세법」 등 인용조문 및 일부 용어 정비

마. 조례 적용시한을 1년간 연장하여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2010.3.31 제정, 2011.1.1 시행)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10.10.14 ~ 11.3, 20일간) 결과

제출자	접수의견	반영 여부	사 유
영등포구 복지정책과	사회적기업에 대한 구세 감면조항 신설	미반영	행정안전부 사전허가 없는 사항으로 금번 개정시 반영할 수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정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9조(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 대한 감면) 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설립된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0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영등포구 안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한 재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5항 단서에 따른 외국인 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로부터 10년간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1호·제2호 본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5항제2호·제3호 본문에 따른 감면은 재산을 취득한 날

제11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12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이 같은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안에서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3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안에서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14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5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16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신고된 직전연도의 숙박용역(객실요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한다. 이 조에서 같다) 공급가액 중 「부가가치세법 시행

령」 제26조제1항제5의3호에 따른 외국인관광객 등에게 공급하는 숙박
용역의 공급가액이 100분의 30 이상(직전연도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해당연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2. 2007년 1월 1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과 대비하여 해
당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호텔 표시가격기준 객실요금을 각 목이 정하
는 비율 이상으로 인하한 경우

가. 특급호텔: 20%

나. 특급호텔 이외 호텔: 10%

보칙

제17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
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 업무 또는 목적사
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8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
3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
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
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로 개정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 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장 총칙</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 7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등포구세의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p> <p>제2조(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8조의 4에 따른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춘 안에 거주하는 중상이자 및 그 중상이자로 구성된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자활용사춘 안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3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민법」 제 32조에 따라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4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 제 31조에 따른 노인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분의 5(을) 경감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3장 평생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p>	<p style="text-align: center;">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감면조례</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1조(목적)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p> <p style="text-align: center;">(----- 한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따른 -----</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제3조(지방의료원에 대한 감면) 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료원이 과세기준일 현재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제5조(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평생교육시설 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다른 용도에 겸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인가·등록·신고하는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 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 31조 또는 제 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제 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p>〈삭 제〉</p>
<p>제6조(사립학교의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교육기본법」에 의한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학생들의 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삭 제〉</p>
<p>제7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재 등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문화재보호법」 제 5조, 제 7조부터 제 9조까지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2. 제 1호의 규정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3. 「문화재 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p>② 「문화재보호법」 제 47조제 1항에 따라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4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현 행	개 정 안
<p>제8조(농협중앙회 등에 대한 감면) <u>「지방세법」 제266조제3항에서 “구판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구매·판매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u> 2. <u>보관·가공·무역 및 그 부속사업용 토지와 건축물</u> 3. <u>생산 및 검사사업용 토지와 건축물</u> 4. <u>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u> 	<p>〈삭 제〉</p>
<p>제4장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p>	<p>〈삭 제〉</p>
<p>제9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① <u>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주택법」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의 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u>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 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②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한다)· 「주택법」 제 9조제 1항제 6호에 따른 고용자 및 「임대주택법」 제 2조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공동주택을 「임대주택법」 제 16조제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3조제 2항 규정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p> <p>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법」 제 16조제 1항제 1호 및 제 2호에 따른 임대주택용 부동산 (공동주택의</p>	

현 행	개 정 안
<p>부속토지와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 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 또는 임대한 복리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p>	
<p>제10조(사권제한 토지 등에 대한 감면)</p> <p>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용 토지로서 같은 법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과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라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의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로써 같은 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지상 건축물 주택 (그 해당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제11조(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 제한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p>	<p><삭 제></p> <p><삭 제></p>

현 행	개 정 안
<p>의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자에 한한다) 및 그 가족이 그 지역에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취약지구지정대상지역 안의 주택으로서 취약지구정비 계획에 따라 개량하는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그 부속토지는 주택의 건축물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주택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12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방공사 등”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지방공사 등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5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①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법인등기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지하철공사에 한정한다)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p> <p>②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단체를 포함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다만, 총자산 중 민간출자분 또는 민간출연분이 있는 경우 그 민간출자비율 또는 민간출연비율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p>
<p>제13조(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승인을 얻어 해당 공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분양 임대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28조의 5에 따라 아파트형공장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p>	<p>제6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p> <p>----- 지식산업센터의 -----</p> <p>----- 지식산업센터에 -----</p> <p>----- 지식산업센터용으 -----</p>

현 행	개 정 안
산을 <u>승계 취득한</u> 경우와 <u>과세기준일</u> 현	<u>로</u> ----- <u>승계취득한</u> -----
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 ----- -----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다목에 ----- -----
<p>제14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시장정비사업시행구역 안의 부동산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재산세를 경감한다.</p> <p>1. 시장정비사업시행용 토지에 대하여는 건축공사 착공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2. 시장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7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p>
<p>제15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한다.</p>	<p>제8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 ①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서울신용보증재단의 법</p>

현 행	개 정 안
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	-----
<p>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공장용 토지에 대하여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분의 50을 경감한다.</p> <p>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분의 50을 경감한다.</p>	<p>----- 대해서는 -----</p> <p>-----</p> <p>-----</p> <p>----- 있을 -----</p> <p>-----.</p> <p>1. ----- 대해서는 -----</p> <p>-----.</p> <p>2. ----- 대해서는 -----</p> <p>-----.</p>
<p>제21조(서울특별시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생략)</p> <p>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p>	<p>제14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② ----- 대해서는 -----</p> <p>-----</p> <p>-----.</p>
<p>제22조(서울특별시 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p> <p>② (생략)</p>	<p>제15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p> <p>-----</p> <p>-----</p> <p>----- 대해서는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3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p> <p>「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분의 50을 경감한다.</p> <p>1. ~ 2. (생략)</p>	<p>제16조(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p> <p>-----</p> <p>-----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제1호에 -----</p> <p>-----</p> <p>-----.</p> <p>1. ~ 2.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보칙</p> <p>제24조(직접사용의 의미)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보칙</p> <p>제17조(직접사용의 의미)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 112조제 2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p>	<p>제18조(감면 제외대상) ----- ----- 「지방세법」 제 13조제 3항에 -----.</p>
<p>제26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p> <p>②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9조(감면신청 등) ① ----- 따라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1호 서식에 따른 지방세감면신청서 ----- ----- ----- ----- ----- ② ----- 제1항에 따른 ----- -----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2호 서식에 -----.</p>
<p>제27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의 규정 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9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 ----- ----- ----- -----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p>
<p>제28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p>	<p>제21조(중복감면의 배제) ----- ----- 둘 이상 의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 -----.</p>
<p>제29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생략)</p>	<p>제2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을 적용) (현행과 같음)</p>
<p>제30조(시행규칙) (생략)</p>	<p>제23조(시행규칙)(현행과 같음)</p>